

2. 전시실 대관 규정

서 언

본 규약은 GS칼텍스 예울마루(이하 “예울마루”라 한다)의 전시 공간, 시설 및 장비 사용 계약의 일부로서, 대관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본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예울마루는 대관 계약을 즉시 무효화하고 전시 및 행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체결이 완료된 대관 계약(사용허가)과 본 대관 규약만이 예울마루와 대관자 사이에 맺어진 유일한 계약으로 이 외에 구두나 서면으로 된 약속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예울마루의 전시실 대관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대관자가 본 규약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시실 운영과 문화예술 창달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대관이라 함은 전시 및 이와 관련된 부대행사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시실의 시설 및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대관자라 함은 1항의 대관 절차를 통해 예울마루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 3 조 (대관의 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은 예울마루 전시 공간 및 전시 부대장비이며, 대관은 전시 및 이와 관련된 부대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대관의 종류)

-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 수시 대관으로 구분한다.
- ② 정기대관은 차기연도의 전시 일정 확정을 위해 예울마루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는 대관이다.
- ③ 수시 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잔여 일정 발생 시 시행되며 사용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이루어진다.

제 2 장 대관 절차

제 5 조 (대관 공고)

- ① 예울마루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기 대관 및 수시 대관 일정을 정할 수 있다. 단, 정기 대관의 경우 제출마감일 40일 전, 수시대관의 경우 14일 전에 공고한다.
- ② 예울마루는 정기 대관 및 수시대관 일정이 정해지면 예울마루 홈페이지에 대관 접수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일간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제 6 조 (대관 신청)

- ① 제3조의 시설물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 수단으로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예약시스템 접수는 예약시스템 구축 시까지 유예한다.
- ② 대관신청 시 대관 기간은 작품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과 작품 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 대관을 원칙으로 한다.
- ③ 1항의 대관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출서류	서식	비고
전시실 대관 신청서	서식 제1호	필수
전시 계획서	서식 제2호	필수
개인 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 제3호	필수
부대장비 사용 신청서	서식 제4호	해당 신청인
대관 변경 신청서	서식 제5호	해당 신청인

제 7 조 (대관 심의)

- ① 예울마루는 대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대관신청을 심의한다. 다만, 경합이 없는 수시대관 등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시 일정 및 예울마루의 사정을 감안하여 담당 팀장과 관장이 결정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예울마루 내부인(관장, 팀장)과 외부인(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최소 5인 이상 구성하고 외부인을 50%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예울마루 관장으로 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으로 심의한다.
 1.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2.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많은 신청인의 경우
 3. 전업 작가의 대관을 경우
 4. 전시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
 5. 신진 예술가, 단체나 사회적 약자가 신청할 경우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이거나 이해 당사기관의 소속된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⑥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⑧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 ⑨ 외부인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 등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⑩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제 8 조 (대관 승인)

- ① 예울마루는 대관 신청 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② 예울마루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전시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부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 기간 및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대관 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명시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계약 포기 간주하여 대관 승인을 취소한다.

제 9 조 (대관 계약 체결)

- ① 대관 승인을 받은 신청자(이하 “사용자”)는 대관 승인 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한 후 대관 계약을 체결한다. 단, 대관 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의 경우에는 대관 승인 후 10일 이내에 대관 계약을 체결한다.
- ② 예울마루는 제1항의 기한 내에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 장 대 관 료

제 10 조 (대관료 기준)

대관료는 매년 시설 유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원가요인을 고려하여 예울마루가 정한다.

제 11 조 (대관료 구성 및 산정)

- ①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장비 사용료로 나뉘며,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기준이다.
- ② 기본시설 사용료는 전시실 사용료 및 냉·난방비와 전기 사용, 향온 향습 설비 가동비 등을 말한다. 부대장비 사용료는 대관자가 기본시설 외에 선택적으로 대여한 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용이다.
- ③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장비 사용료는 [망마]편 또는 [장도]편의 사용료 규정을 따른다.
- ④ 전시 준비 또는 작품 철수 등을 위해 기준시간(10:00~18:00) 외 추가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예울마루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추가 작업시간에 대한 대관료는 2시간을 기본 단위로 하여 일일 대관료의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며, 작업시간은 전시실의 시설 안전 및 보안 유지 관계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 ⑤ 단, 불가피하게 오후 10시 이후 작업(익일 09:00까지)이 필요한 경우 예울마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추가시간의 대관료는 2시간을 기본단위(예, 3시간 사용 시 4시간으로 간주함)로 하여 일일 대관료의 150%를 적용한다.

제 12 조 (대관료 감면)

대관 승인이 완료된 전시 중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100%를 감면할 수 있다.
 1. 여수시가 주최(주관) 하고, GS칼텍스재단이 후원(협찬) 하는 비영리 목적의 전시
 2. GS칼텍스재단이 주최(주관) 하는 비영리 목적의 전시
-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여수시의 문화예술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목적의 전시
 2. GS칼텍스재단이 후원(협찬) 하는 비영리 목적의 전시
- ③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여수지역 작가 혹은 예술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전시의 경우 30%
 2. 여수지역 이외의 전남지역 작가 혹은 예술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전시의 경우 20%
- ④ GS칼텍스 예울마루와 별도의 협약(MOU) 등 체결된 경우 그에 따른다.
- ⑤ 천재지변, 재난 및 기타 불가항력에 대해 관장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 13 조 (대관료 납부)

대관료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한다.

- ①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전일까지 GS칼텍스재단 법인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은 자동 취소된다.
- ② 계약금은 제11조에서 산정한 기본시설 사용료 총액 기준 10% 이다.
- ③ 잔금은 전시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울마루는 잔금 납부 시까지 전시 개막을 유보하거나 전시 작품 일부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 예울마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④ 전시 기간 중 추가로 전시공간 및 부대장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예울마루의 사용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전시 철수 전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완납이 안 되었을 시에는 전시 작품 일부에 대하여 예울마루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 ⑤ 예울마루는 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 보증보험 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전시의 입장권 판매금액 또는 작품을 최우선 하여 담보로 받을 수 있다.

제 4 장 전시 진행

제 14 조 (전시 진행의 정의)

전시 진행이라 함은 전시, 준비 기간 및 작품 반출 기간을 포함한 대관 기간에 이루어지는 제반 진행사항을 말한다.

제 15 조 (전시 진행 시 유의사항)

- ① 대관자는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 시작 최소 4주 전에 전시 진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 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관자는 물론 설치 제작자가 설치 방안 등 제반 사항을 예울마루와 협의하여야 하며, 예울마루는 검토 결과 전시실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대관자는 승인받은 내용 이외의 별도의 부대행사(정치 및 종교행사, 상품 판매 행위 등)는 할 수 없다.
- ③ 대관자는 전시 진행에 지장을 가져오는 일체의 물품(화환, 화분, 꽃 등)을 전시실 내부로 반입할 수 없으며, 해당 물품을 전시실 외부에 놓을 경우 반드시 대관자가 철수해야 한다.
- ④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자는 전시 개막 일주일 전까지 전시 작가, 작품 목록 규격, 제작연도를 표시한 목록표와 인쇄물 각 5부씩을 예울마루에 제출해야 한다.
- ⑤ 대관자는 전시실의 조명 등 장비를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 예울마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⑥ 대관 전시로 인해 예울마루가 추가로 인력을 활용할 시에는 대관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⑦ 전시실 안내원의 복장은 관람객과 구분되는 통일되고 단정한 복장이어야 하며 안내원 교육은 예울마루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⑧ 대관자는 전시 기간 동안, 특히 유료 전시일 경우, 관람객들에게 전시 내용과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작품 설명회를 예울마루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 16 조 (전시 관람 시간)

- ① 전시는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종료한다. 따라서 관람객 입장은 종료 30분 전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전시 기간 중 관람객 입장 현황을 일자별로 예울마루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전시실 유지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로 한다. 전시 기간 중 휴관일이 포함된 경우 휴관일은 대관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 작품 설치 및 철수 기간이

휴관일에 포함된 경우에는 대관료 산정에도 포함된다.

- ④ 예울마루는 제3항의 정기 휴관일을 사용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입 장 권

제 17 조 (입장권의 발행)

- ① 대관자는 입장권 예매, 현장 판매 등 입장권 발행 시 예울마루의 매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수수료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 ② 대관자는 입장권 발행 또는 판매 시 기본 대관료 및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가 입장권을 인쇄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입장권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전시실에서는 전시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관람한다.
 2. 음식물, 화환, 화분, 꽃다발 등 전시 관람에 지장을 주는 물품 일체의 것을 반입하거나 소지하고 전시실에 입장할 수 없다.
 3. 전시관람 중 본인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예울마루나 대관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 ④ 대관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할 경우, 본인과 직계자 동반 1인까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이외에 정부 및 공공단체에서 행하는 할인정책이 시행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예울마루는 전시실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일정량의 진행 티켓을 사용한다.
- ⑥ 대관자는 입장권 발매 시 예울마루와 협의하여 최소 1일 5매 이상의 진행 티켓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장 홍보물 및 방송, 판촉

제 18 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 ① 대관자는 전시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홍보제작 메뉴얼에 따르며 예울마루의 CI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전시 홍보용 현수막은 예울마루가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배너 설치는 전시실 질서유지를 위해 예울마루와의 협의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 조 (방송, 판촉, 부대행사 등)

- ① 예울마루에서 행해지는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을 하고자 할 때는 전시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울마루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부대행사는 전시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울마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장소 이외의 곳을 사용할 때에는 별도 장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는 전시실에서 전시 작품, 행사 응용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 상품

을 전시할 수 없다. 다만, 대관신청 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울마루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장 대관 신청 제한

제 20 조 (대관 신청 제한, 승인 제한 및 취소)

- ① 예울마루는 다음의 각호 중 해당하는 사유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받지 않는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예울마루의 시설 및 장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울마루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전시 및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전시 또는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4.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 ② 다음 각호중 해당하는 사유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 예울마루는 대관 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 승인 후 대관 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대관 승인 후 위 제1항의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3.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4. 예울마루가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 및 부대장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5. 이 규약을 위반하여 대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 8 장 대관 취소 및 계약해지

제 21 조 (대관 취소)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취소 신청서를 예울마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전시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00% 반환
- ② 예울마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 ③ 전시실 사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대관 기간이 30일 이상인 장기 대관의 경우는 최소 60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을 하여 예울마루의 승인을 얻은 경우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29일~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 ④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제 22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 승인 또는 계약 체결 후 공동 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 사항 발생시에는 예울마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 23 조 (대관 내용 변경 금지)

대관자는 전시 내용, 작가 구성 등을 예울마루가 승인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 측 사정에 의해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울마루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울마루는 이 내용 변경이 대관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4 조 (대관 일정 변경 금지)

대관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예울마루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예울마루 사정에 의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5 조 (시설 및 설비 변경 금지)

- ① 대관자는 전시, 부대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 부스 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예울마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위 제1호에 의한 설비는 행사 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예울마루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예울마루는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예울마루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예울마루는 위 2호 및 3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관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대관자는 전시실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 ⑥ 전시 입장권 배포 시 대관자는 전시실 안내 데스크에서 배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⑦ 전시실 내에는 개막식 및 각종 행사 시 조리음식을 반입할 수 없다.

제 9 장 화재 예방 및 전시실 관리 의무 사항**제 26 조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 ① 예울마루는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 통제, 안전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 ②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예울마루의 시설(전시실, 로비, 전시실의 집기, 비품 등)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예울마루 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 내규에 의거하여, 전시 관련 기본시설 외 간이

칸막이 등 별도의 실내 건축물 또는 작품 설치와 관련 모든 반입 물품들은 소방법에 의한 방염처리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방염처리 확인 필증을 받은 것만 설치가 가능하다.

2. 휘발유, 신나, LP가스 등 인화성이 있는 발화물질은 반입을 일절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울마루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대관자는 발화물질을 사용할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작업장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④ 대관자는 예울마루가 정하는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7 조 (전시실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 ① 예울마루는 대관 기간 중(전시 준비 및 마무리 기간 포함) 전시와 관련하여 예울마루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대관 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전시 작품과 전시물 및 장비에 관한 관리 책임은 전시 준비 기간, 전시 기간, 반출 기간의 전 과정에 걸쳐 대관자에 있다.
- ③ 예울마루는 위 제2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관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대관자는 전시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 물품, 기타 자재를 대관 기간 종료 시점까지 철수, 수거하여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예울마루는 대관자가 철수 및 수거의 의무를 해태할 시에는 스스로 철거 및 수거를 행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철거 및 수거작업에 소요된 비용 및 보관비용 일체를 변상할 의무를 가진다. 대관자는 이 변상 비용을 작업 이후 14일 이내에 예울마루 측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⑤ 대관자는 전시실을 대관함에 있어 파손, 훼손, 망실, 무단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예울마루 측에 배상할 책임을 가진다.
- ⑥ 예울마루는 대관자에 전시 내용에 따라 대관 이전의 원상복구 보장을 위하여 대관료 외 원상복구에 준하는 별도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전시 준비, 전시, 철수 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를 위한 수수료를 실비로 대관자에 부과할 수 있다.

제 10 장 기 타

제 28 조 (소정 양식)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예울마루가 지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 29 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예울마루와 대관자 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30 조 (항변권)

- ① 예울마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전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대관자는 항변할 수 있다.
- ②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울마루는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1 조 (규약 변경 통지 및 승인)

- ①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예울마루는 대관자에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대관자는 통지서 발송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예울마루에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제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락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 32 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예울마루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33 조 (관할 법원)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GS칼텍스재단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34 조 (규약 위반 시의 책임)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품목	기준	금액	비고
야외공연장(바닥분수)	순수예술/복합장르 공연		1회 5시간 1,200,000원	부대장비 사용료 별도
	대중콘서트/행사		1회 5시간 1,800,000원	
	전시/리셉션		1회 5시간 800,000원	-
	준비/철수대관		일 700,000원	
기타공간	로비	대극장_일반 리셉션 (4F)	1회 3시간 400,000원	기타 집기 및 폐기물 처리비용 별도
		대극장_대관자 리셉션 (4F)	1회 3시간 200,000원	
		소극장/전시장_일반 리셉션 (3F, 7F)	1회 3시간 300,000원	
		소극장/전시장_대관자 리셉션 (3F, 7F)	1회 3시간 200,000원	
		대극장/소극장/전시장_사인회 (3F, 4F, 7F)	1회 3시간 50,000원	
	야외 테라스	대극장 메인 출입구 (4F)	1회 4시간 700,000원	전기/조명/음향 장비 및 기타 집기, 폐기물 처리비용 등 별도
		대극장 객석 2층 (5F)	1회 4시간 100,000원	
		오피스 (6F)	1회 4시간 350,000원	
		전시장 (7F)	1회 4시간 300,000원	
	리허설룸	리허설룸 1	1회 4시간 200,000원	대관계약 조건 외 사용 시 적용
		리허설룸 2	1회 4시간 150,000원	
	분장실/락커룸/세탁실		1일 1실 50,000원	1회 3시간 7인실 / TV 1회 3시간 4인실 화장실, 탕비대 완비
	VIP실	6층 VIP실	1회 4시간 100,000원	
		5층 VIP실	1회 4시간 100,000원	
스태프 추가 지원	음향/조명 디자인		1작품 1,500,000원	-
	무대/조명/음향 등 기술인력 지원		1회 8시간 100,000원	-
기타	촬영대관		4시간 3,000,000원	예율마루 전체 공간 적용
	TV녹화 / 중계 (전시/공연관련)		1회 200,000원	녹화시설 사용료 (방송국 부담)
	라디오/인터넷		1회 200,000원	
	환경 정리금		대관자 미반출시 200,000원	대관자 반출 시 50,000원

2. 전시실 대관 사용료(망마)

1. 전시실 대관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면적	금액	비고
1 전시실	492m ²	일 300,000원	10:00~18:00 8시간 기준
2 전시실	180m ²	일 170,000원	
3 전시실	185m ²	일 170,000원	
1+2 전시실	672m ²	일 370,000원	
1+2+3 전시실	857m ²	일 500,000원	

2. 부대장비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상세	보유량	금액	비고
가벽	366X244X45cm	4	50,000원	전시 회당 기준
가벽	244X244X45cm	4	50,000원	
좌대	40X50X90cm	9	5,000원	
음향 장비 시스템	Amp, Mic	1조	일 200,000원	
기타집기	단상,프로젝트	1조	일 50,000원	프로젝트(삭제)

- ※ 위 대관료는 전시실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기준이다.
전시실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추가 시간의 대관료는 1시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시간당 단가를 적용한다.
- ※ 전시준비 또는 작품철수 등을 위해 기준시간(09:00~18:00)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추가시간의 대관료는 2시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일일 대관료의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며, 작업시간은 전시실의 시설안전 및 보안유지 관계로 22:00까지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하게 22:00 이후 심야작업(익일 09:00까지)이 필요한 경우 심야작업 사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추가 시간의 대관료는 2시간을 기본 단위로 하여 일일 대관료의 150%를 할증 적용한다.

- ※ 전시관련 도록 판매 외에 기념품 등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 판매점을 설치할 경우 시설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의 별표와 같이 사용료가 부과된다.
- ※ 전시기간 중에는 작품의 보호를 위하여 기타 방송, 영화, CF 제작을 위한 대관이 불가능하다. 전시 주최 측에서 전시홍보를 위한 방송 또는 CF 제작을 위하여 촬영을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시실 대관 사용료(장도)

1. 전시실 대관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면적	금액	비고
장도 전시실	409m ²	일 250,000원	10:00~18:00 8시간 기준

2. 부대장비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상세	보유량	금액	비고
음향 장비 시스템	Amp, Mic	1조	일 200,000원	프로젝트(삭제)
기타집기	단상, 프로젝트	1조	일 50,000원	

- ※ 위 대관료는 전시실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기준이다.
전시실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추가 시간의 대관료는 1시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시간당 단가를 적용한다.
- ※ 전시준비 또는 작품철수 등을 위해 기준시간(09:00~18:00)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추가시간의 대관료는 2시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일일 대관료의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며, 작업시간은 전시실의 시설안전 및 보안유지 관계로 22:00까지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하게 22:00 이후 심야작업(익일 09:00까지)이 필요한 경우 심야작업 사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추가 시간의 대관료는 2시간을 기본 단위로 하여 일일 대관료의 150%를 할증 적용한다.
- ※ 전시관련 도록 판매 외에 기념품 등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 판매점을 설치할 경우 시설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의 별표와 같이 사용료가 부과된다.
- ※ 전시기간 중에는 작품의 보호를 위하여 기타 방송, 영화, CF 제작을 위한 대관이 불가능하다. 전시 주최 측에서 전시홍보를 위한 방송 또는 CF 제작을 위하여 촬영을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